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7가단962 판결 [구상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A

변론 종결2017. 4. 4.

판결 선고2017.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48,000원과 그중 7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6.부터, 4,214,000원에 대하여는 1994. 12. 9.부터, 2,668,000원에 대하여는 1994. 12. 14.부터 1,533,000원에 대하여는 1994. 12. 21.부터, 273,000원에 대하여는 1995. 2. 23.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2. 15.부터, 1,760,000원에 대하여는 1996. 2. 27.부터 각 1996.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4. 7.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인하병원 쪽에서 중앙극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택시의 보험자로서 공제약관에 따라 F,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2947호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55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6. 11.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하면3885, 2011하단38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구상금의 채권자인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가 정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적법하지 않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성수